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16

수 원 지 방 법 원

제 4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904 자동차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피 고 ○○시장
변 론 종 결 2023. 12. 6.
판 결 선 고 2024. 1.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월부터 2021. 8월까지 원고에게 한 별지1 과세내역 목록 순번 1 내지 43 기재 각 자동차세 합계 7,140,420원의 부과처분 및 별지1 과세내역 목록 순번 44, 45 기재 각 취득세 합계 382,09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고차 매매 및 중개를 하면서 차량구입대금 사기, 차용금 사기, 차량 판매 대금 횡령 등 범행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2014노5015, 7359(병합)], 위 판결 2015. 5. 29.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7. 3. 30. ○○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7년 2기 내지 2021년 1기 과세기간 원고 명의로 등록된 별지1 과세내역 목록 순번 1 내지 43 기재 각 자동차(이하 '이 사건 각 자동차'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자동차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B은 원고가 수감 중 원고를 상대로 별지1 과세내역 목록 순번 44, 45 기재 각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인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11. 9. '원고는 B으로부터 위 각 자동차에 관하여 2012. 11. 1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2017가단2359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라. 관련 민사사건 판결에 따라 2018. 1. 18. 원고 명의로 별지1 과세내역 목록 순번 44, 45 기재 각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과세내역 목록 순번 44, 45 기재 각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자동차세 부과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7. 3. 30. ○○교도소에서 출소된 이후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경제활동을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외 장소에서 생활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송달받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각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운행한 적이 없으며 그 소재나 행방도 모른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자동차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이다.

3.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하는 과세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하겠으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경우에 이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오인한 과세 처분을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자동차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적인 성질의 조세이고,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바,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실제로는 소



유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그 납세의무를 면하지 못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9704 판결, 1999. 3. 23. 선고 98도327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된 사실이 인정된다.

지방세법 제125조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가 이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인데, 지방세법 제124조는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6조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실제로는 소유자가 아니거나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자동차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다.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지(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3342 판결 참조)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를 정함에 있어서 취득의 경제적 효과가 종국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하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취득사실이 존재할 당시 그 취득의 효과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2) 원고가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2017. 3. 30.에 이르러서야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18조에 따라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데, 이때 '취득'의 의미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조 제1호가 적용되어 차량의 경우 사실상 이를 취득하기만 하면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관련 민사사건 판결에 따라 2018. 1. 18. 원고에게 별지1 과세내역 목록 순번 44, 45 기재 각 차량의 소유권이 이전등록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그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각 자동차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공○○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16

판사 조○○

판사 차○○



별지1

과세내역 목록

순번	세목	과세물건	본세	납기일	발송일
1	자동차세	<삭제처리>	128,960원	2017.12.31.	2017.12.8.
2	자동차세		260,670원	2017.12.31.	2017.12.8.
3	자동차세		214,210원	2017.12.31.	2017.12.8.
4	자동차세		168,230원	2017.12.31.	2017.12.8.
5	자동차세		128,530원	2019.12.31.	2019.12.6.
6	자동차세		142,350원	2019.12.31.	2019.12.6.
7	자동차세		142,630원	2019.12.31.	2019.12.6.
8	자동차세		183,610원	2019.12.31.	2019.12.6.
9	자동차세		188,630원	2019.12.31.	2019.12.6.
10	자동차세		194,670원	2019.12.31.	2019.12.6.
11	자동차세		207,930원	2019.12.31.	2019.12.6.
12	자동차세		217,230원	2019.12.31.	2019.12.6.
13	자동차세		270,120원	2019.12.31.	2019.12.6.
14	자동차세		10,040원	2020.6.30.	2020.6.9.
15	자동차세		27,070원	2020.6.30.	2020.6.5.
16	자동차세		61,750원	2020.6.30.	2020.6.5.
17	자동차세		129,410원	2020.6.30.	2020.6.5.
18	자동차세		142,630원	2020.6.30.	2020.6.5.
19	자동차세		183,610원	2020.6.30.	2020.6.5.
20	자동차세		188,630원	2020.6.30.	2020.6.5.
21	자동차세		194,670원	2020.6.30.	2020.6.5.
22	자동차세		207,930원	2020.6.30.	2020.6.5.
23	자동차세		217,230원	2020.6.30.	2020.6.5.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16

순번	세목	과세물건	본세	납기일	발송일
24	자동차세	<삭제처리>	270,120원	2020.6.30.	2020.6.5.
25	자동차세		129,410원	2020.12.31.	2020.12.7.
26	자동차세		129,670원	2020.12.31.	2020.12.7.
27	자동차세		168,310원	2020.12.31.	2020.12.7.
28	자동차세		188,630원	2020.12.31.	2020.12.7.
29	자동차세		194,670원	2020.12.31.	2020.12.7.
30	자동차세		207,930원	2020.12.31.	2020.12.7.
31	자동차세		217,230원	2020.12.31.	2020.12.7.
32	자동차세		245,570원	2020.12.31.	2020.12.7.
33	자동차세		27,070원	2021.6.30.	2021.6.7.
34	자동차세		61,750원	2021.6.30.	2021.6.7.
35	자동차세		129,410원	2021.6.30.	2021.6.7.
36	자동차세		129,670원	2021.6.30.	2021.6.7.
37	자동차세		168,310원	2021.6.30.	2021.6.7.
38	자동차세		188,630원	2021.6.30.	2021.6.7.
39	자동차세		194,670원	2021.6.30.	2021.6.7.
40	자동차세		207,930원	2021.6.30.	2021.6.7.
41	자동차세		217,230원	2021.6.30.	2021.6.7.
42	자동차세		245,570원	2021.6.30.	2021.6.7.
43	자동차세		7,900원	2021.8.31.	2021.8.9.
44	취득세(차량)		247,790원	2018.4.30.	2018.4.3.
45	취득세(차량)		134,300원	2018.4.30.	2018.4.3.
합계			7,522,510원		

끝.



별지2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7. "차량"이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8조(납세지) ① 취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차량: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하고, 철도차량의 경우에는 해당 철도차량의 청소, 유치(留置), 조성, 검사, 수선 등을 주로 수행하는 철도차량기지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제18조(징수방법)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 또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4조(자동차의 정의) 이 절에서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25조(납세의무자)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26조(비과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



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 또는 소방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자수송·청소·오물제거 또는 도로공사를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3. 그 밖에 주한외교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비과세)

- ② 법 제126조 제3호에서 "주한외교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 ③ 제2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위탁·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제151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세조합"이라 한다)의 장(이하 "지방세조합장"이라 한다)에게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21조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4.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5.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제9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본다.



- ②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을 준용한다.
- ③ 제89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을 말한다)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라 경기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지방소비세는 제외한다)를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법 제151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자동차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3조(말소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7. 제14조의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換價)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囑託)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압류등록)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을 하여야 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 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③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

1.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자동차의 차대[차대가 없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차체(車體)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등록원 부상의 차대와 다른 경우
3. 제24조의2 제2항 또는 제37조 제3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① 자동차는 제2조 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2.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 다만, 수사기관의 장이 제2조 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를,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각각 명하여야 한다.

3.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24조의2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4조의2 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을 하려면 미리 그 뜻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거소를 알 수 없는 등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자동차 소유자는 운행정지명령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에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운행정지명령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해당 자동차가 법 제24조의2 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의사표시를 받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가 법 제24조의2 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자동차인지 여부를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24조의2 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할 수 있는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도 자동차 소유자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
 2.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에는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도 자동차 소유자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운행정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
 4. 자동차 소유자가 제5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요청을 하였을 때
- ⑤ 자동차 소유자는 법 제24조의2 제2항에 따라 본인 소유의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13호서식의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자동차등록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자동차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1조(말소등록 신청) ① 말소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말소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재산관리인이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② 법 제13조 제1항 제7호 전단에서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2.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3.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4. 차령 12년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 행정소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0조(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는 날부터 1년(第1項 但書の 경우는 裁決이 있는 날부터 1年)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끝.